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82

발의연월일: 2024. 6. 18.

발 의 자:서지영·박성민·곽규택

성일종 • 이헌승 • 박수영

박충권 · 송언석 · 김대식

박덕흠 • 유상범 • 최은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하에서 소수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확보가용이한 반면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거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확보가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제21대국회의원선거 및 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 거대 양당은 이른바 위성정당을 각각 내세워 선거에 참여하였고 높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다수 확보한 뒤 합당함으로써 당초 제도 취지에 역행하였다는 비판이 있었음.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가 적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없는 근본적 한계가 있고, 비례대표 의석 계산이 매우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음.

이에,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여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와 관계없이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따라 정당에 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9조제2항, 제3항 등).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을 "해당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을 "의석정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의석정수"로 한다.

- ② 제1항의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 ③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 표국회의원 의석정수(이하 이 조에서 "의석정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 통지) ① -----

정

아

개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저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u>해당 의석할당정당이</u>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 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석을-----

1.·2. (생략)

- 1.·2. (현행과 같음)
-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다.

② 제1항의 득표비율은 각 의 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 로 나누어 산출한다.

1.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연 동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 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연동배분의석수는 0으로 한다.

_

```
의석할당정
                당이 추천
연동배
          국회
                하지 않은
 분
    = [ (
          의원
                지역구국회
의석수
          정수
                의원당선인
      해당 정당의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해당 정당의
    - 지역구국회의원당 ] ÷ 2
      선인수
```

2.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 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 미 달할 경우 각 의석할당정당 에 배분할 잔여의석수(이하 조에서 "잔여배분의석수" 0 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 (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 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

_

 잔여배분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

 의석수
 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

 비율

3.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 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 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초 과할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 식에 따라 산출된 수(이하 이 조에서 "조정의석수"라 한다)를 각 연동배분의석 할 당정당의 의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출방식에 관하여 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조정의 = 비례대표국회 x 연동배분 석수 의원 의석정수 x 의석수 ÷ 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③ 제2항의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 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 누어 산출한다.

- ④ · ⑤ (생 략)
-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

③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이하이 조에서 "의석정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 ④·⑤ (현행과 같음)
- 6 -----

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 198조(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투 표구의 선거인수를 전국선거인 수로 나눈 수에 비례대표국회 의원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 로 본다)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부 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 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 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 당마다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 정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정수(1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 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 ⑦・⑧ (생략)

<u>의석정수</u>
의 <u>석정수</u>
,
⑦ · ⑧ (현행과 같음)